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유재목 의원)
2. **발의의원** : 유재목 의원, 김외식 의원
3. **개정이유**
 - 출산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및 초등학교 입학 아동에 대한 입학 축하금 지원으로 출산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강화 및 전입 유도 등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지원사업 규정 추가(안 제3조)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기준 추가(별표 1)
- 출산장려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관련 지원 요건 추가(별표 2)
- [별표 2] 제1호 가목 관련 출생일 기준 적용례 추가(부칙)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옥천군의회의회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1.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인구증가 지원 사업 지원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사업명	시책명	적용기준	지원내용	비고	
출산장려 지원	출산 축하금	첫째아이	200만원	월 20만원 10회 분할 지급	
		둘째아이	300만원	월 20만원 15회 분할 지급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월 25만원 20회 분할 지급	
	출산용품지원	출생아	10만원 상품권		
전입장려 지원	전입(국적 취득 포함) 보상금	세대전입(2명 이상)	50만원 상품권	세대전입(2명 이상)과 개인은 중복지원 불가	
		개인	학생, 군인, 군무원,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 기업체(개인사업자 포함) 임직원		30만원 상품권
			학생 추가장려금		매년 10만원 상품권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만 19세 이상	1년간 관내 문화시설 관람료 50%할인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세대	20리터 봉투 50매		
교통비 지원	세대	10만원 교통카드			
다자녀 학자금 지원	다자녀 학자금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읍지역 수업료이내의 금액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급지"가"의 기준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세부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준하고, '서비스 가격'기준은 단축형 또는 표준형으로 적용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임신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	엽산제	1회 2개월분 (최대 2회)	
		출산 후 2개월 이내 산모	종합 영양제	1회 2개월분	
결혼지 혼착원	결혼착금	결혼정착금 5백만원 이내 (동일인에 한하여 1회만 지급)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최초 지급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입학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1명당 20만원	※ 단, 신청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가 재학 중일 경우 지원 가능	

인구증가 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제4조 관련)

1. 출산장려 지원(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지원)
 - 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다만,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 나. 지원 대상 신생아가 둘째아이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출생순위를 인정
2. 전입장려 지원
 - 가. 전입 보상금
 - 1) 세대 전입: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2명 이상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2) 개인 전입: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 군무원 및 「국적법」에 따른 귀화에 따른 국적 취득자,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개인사업자 포함) 종사 임직원. 단, 학생은 전입한 날부터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추가 장려금을 3년에 한정하여 지급
 - 나.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
 - 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라.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3. 다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자녀도 해당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나. 지원 대상 신생아가 둘째아이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출생순위를 인정
5.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 중 임신준비 중인 여성과 출산 후 2개월 이내 산모
6. 결혼정착금 지원
 - 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 하는 만19세 이상 만49 세 이하 남녀 (단, 국제결혼인 경우는 국적취득 후 최초 신청 가능)
 - 나. 재혼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나, 부부 모두 결혼정착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7.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입학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급(다만,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학생도 해당)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사업 등) ① 옥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u><신 설></u></p> <p>8.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3조(지원사업 등) ①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